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66회 임시회

# 검토보고서

2024. 2. 27.(화)

검토안건	발의
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	한선미 의원외 7명



복지도시위원회  
[전문위원 장홍용]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 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”

#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장홍용)

## 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한선미 의원 외 7명
- 제안일 : 2024. 2. 16.
- 회부일 : 2024. 2. 20. (의안번호 : 24-15)

## 2. 제안이유

-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, 부식비 지원을 명문화하여 중식을 제공하려는 경로당의 부담을 경감시키고, 어르신들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부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5조제1항제2호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, 제47조
- 예산조치 : 별첨 비용추계서
- 입법예고 : 2024. 2. 14. ~ 2. 20.(제출의견 없음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, 부식비 지원을 명문화하여 중식을 제공하려는 경로당의 부담을 경감시키고, 어르신들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
-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  - 안 제5조제1항제2호의 부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.
- 종합검토의견
  - 경로당은 「노인복지법」 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, 냉난방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현행 조례는 '경로당 급식지원'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.
- 초고령사회로의 이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노인의 영양불량은 만성질환 발병률을 높일 수 있고, 신체기능 등 노인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으며 경로당에서의 식사는 단순히 밥 한 끼 먹는다는 것을 넘어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고독감도 줄여주는 등 긍정적인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됨.

이에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위해 경로당 급식 지원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부식비 지원을 명문화하여 중식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상위 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

담당부서	담당과장	담당팀장
어르신동행과	한경미 (8860)	이광재 (8861)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

## 비용추계서

### 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제5조제1항,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경로당 1개소당 월 부식비 200,000원 산정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
세입	소계(a)						
세출	○ 부식비	379,200	379,200	379,200	379,200	379,200	1,896,000
	소계(b)	379,200	379,200	379,200	379,200	379,200	1,896,000
□ 총비용(a-b)		-379,200	-379,200	-379,200	-379,200	-379,200	-1,896,000
							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
의존 재원	소계	-	-	-	-	-	-
	자체 수입	379,200	379,200	379,200	379,200	379,200	1,896,000
	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	379,200	379,200	379,200	379,200	379,200	1,896,000
	지방채	-	-	-	-	-	-
	민간자본	-	-	-	-	-	-
	기타	-	-	-	-	-	-
합계		379,200	379,200	379,200	379,200	379,200	1,896,000

5. 덧붙이는 의견

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김해인
연락처	02-3153-8865

#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200,000원(서울시 5개구 부식 지원비 평균액) × 158개소 × 12개월

## 참고 자료

### 1. 관련법령

#### 노인복지법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(「양곡관리법」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)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11.>

제47조(비용의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## 2. 마포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경로당 현황

○ 65세 이상 노인인구: 56,921명 ('23. 12. 31. 기준)

[마포구 경로당 이용자 현황]

(2023. 9. 1. 기준)

구분	경로당 수(개소)	경로당 회원 수(명)	월 평균 이용자 수(명)
구립	46	1,711	13,129
사립	112	3,342	21,678
계	158	5,053	34,807

### ○ 경로당 '중식' 관련 지원 사항

항 목	내 용
지원대상	경로당 158개소
기본운영비	월 350,000원 (시50 : 구50) ※ 주·부식비 포함
양곡지원	4,8,12월에 신청 경로당에 이용인원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
경로당중식도우미 (노인일자리사업)	신청 경로당에 이용인원을 고려하여 차등 파견

- 운영비 및 양곡으로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경로당도 있으나, 경로당 실정에 따라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
- '경로당중식도우미'는 경로당 이용자가 주로 신청하며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자격을 충족해야 함(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)

### ○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업

항 목	내 용
사업근거	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
사업대상	75세 이상 (독거)어르신 500명
사업내용	무료 중식 제공
소요예산	2024년 효도밥상 운영지원 50,925천원 편성 ※ 급식비는 마포복지재단 출연금 및 후원금으로 집행

- 반찬공장을 통한 거점형 이동급식을 실시하여 급식기관 및 이용자수 확대 예정(상반기 500명·하반기 500명, 총 1,000명 신규지원 계획)

○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(경로식당)

항 목	내 용	비 고
사업대상	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어르신	
사업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로식당(60세 이상, 주6회)</li> <li>- 도시락·밑반찬 배달(65세 이상, 주7회)</li> <li>- 밑반찬 배달(65세 이상, 주2회)</li> </ul>	
소요예산	2024년 경로식당 운영지원 207,861천원(구비) 편성	사비 1,667,357천원